

초기 개입 서비스 사무국	717-346-9320
CONNECT (초기 개입을 위한 정보 서비스)	800-692-7288

장애인의 교육을 다루는 연방법인 장애인 교육 법조항 (IDEA)에 의거하여 지역 교육 당국은 IDEA와 미 교육부 규제하의 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절차 보호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 본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1년에 1회에 걸쳐 이를 전달하도록 하거나 혹은 (1) 평가를 위해 처음 위탁되는 경우, 부모의 평가요구시 (2) 34 CFR §§300.151 - 300.153에 의거한 부모로부터의 처음 작성되는 주 불평안의 제출의 경우와 학년 동안에 §300.507에 의거하여 부모에 의하여 처음 작성되는 정당한 법의 절차에 대한 불평서의 제출시, (3) 부모의 요청에 의거하여 부모에 전달되게 됩니다. [34 CFR §300.504(a)]

아동 개발 및 초기 학습 사무소, 초기 개입 서비스 사무국에 연락하여 부모의 선택사항 및 절차 보호, 기타 기관 및 지원 서비스, 구제안, 부모가 시행하여야할 절차 방법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절차 보호 통지서 이외 초기 개입 프로그램은 또한 “초기 개입의 문제 해결([www.pattan.net](http://www.pattan.net))”의 안내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부모, 출생서부터 학교연령 사이의 장애자녀 및 초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자녀를 대신하는 대변인은 커넬트 요원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외 기타 연락망 및 기관처는 본 통지서의 말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차례**

<b>I. 일반정보</b> .....	<b>1</b>
부모는 누구인가? .....	1
사전 서면 통지서란? .....	1
모국어가 무엇인가? .....	2
전자메일에 의한 통보 .....	2
부모 동의서란? .....	2
부모 동의서는 언제 요구되는가? .....	2
개인신분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 .....	5
<b>II. 기밀정보</b> .....	<b>6</b>
나의 자녀에 대한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구인가? .....	6
정의 .....	6
개인신분정보 .....	6
접근 권한 .....	6
1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기록 .....	6
교육 기록의 유형 및 위치에 대한 목록서 .....	6
비용 .....	6
부모 요청에 의한 기록의 수정 .....	6
기록 청문회에 관한 기회 .....	7
공청회 과정 .....	7
공청회 결과 .....	7
보호 .....	7
정보의 파멸 .....	7
<b>III. 주 불평 과정 (34 CFR §§300.151-153)</b> .....	<b>9</b>
적정 절차 공청회 불평과 주 불평 절차의 차이 .....	9
주에 대한 불평을 어떻게 제소할 것인가? .....	9
주 불평 절차의 채택 .....	9
최소한의 형태의 주 불평 절차 .....	9
<b>IV. 적정 절차 불평 과정</b> .....	<b>11</b>
적정 절차 공청회를 어떻게 요청할 것인가? .....	11
적정 절차 불평의 내용 .....	11
해소과정 .....	12
<b>V. 적정과정 불평에 관한 공청회</b> .....	<b>14</b>
공평한 적정 절차 공청회 .....	14
공청회 권한 .....	14
공청회 결정 .....	15
최종결정; 항소; 공평한 검토 .....	15
공청회의 편리함 및 시기 .....	15
조치를 제기할 시간을 포함한 민사소송 .....	16
변호사비 .....	16
모범양식서 .....	17

<b>VI. 중재 (34 CFR §300.506)</b> .....	<b>18</b>
일반 .....	18
절차 요구사항 .....	18
중재자의 공정성.....	18
<b>VII. 자녀의 배치 미결정 중재 및 적정 절차 (34 CFR §300.518)</b> .....	<b>19</b>
일반 .....	19
<b>VIII. 나의 자녀가 규정상의 이유로서 학교에서 추방되게 되면?</b> .....	<b>Error! Bookmark not defined.</b>
학교요원의 권한.....	Error! Bookmark not defined.
규정상 추방으로 인한 배치의 변경 .....	Error! Bookmark not defined.
환경의 결정 .....	Error! Bookmark not defined.
향소 .....	Error! Bookmark not defined.
향소중의 배치 .....	Error! Bookmark not defined.
아직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인에 속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보호 .....	Error! Bookmark not defined.
법령 시행부 및 사법당국으로의 소개 및 이들에 의한 조치 .....	Error! Bookmark not defined.
<b>IX. 부모로서 사립학교에 배치하는 경우 나의 자녀에게 유용한 특수교육서비스는 무엇인가?</b> Error! Bookmark not defined.	
일반 규칙 .....	Error! Bookmark not defined.
예외 .....	Error! Bookmark not defined.
공평한 참여 .....	Error! Bookmark not defined.
<b>부록 A</b> .....	<b>20</b>
자료 .....	20
<b>부록 B</b> .....	<b>21</b>
중재 요청서 .....	21
적정 절차 불평 통지서 .....	Error! Bookmark not defined.

I. 일반 정보

A. 부모는 누구인가? (34 CFR §300.30)

본 조항은 특수 교육 결정사항의 목적으로서 부모로서 행동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기술하여 준다.

부모는 자녀의 친부모, 양부모(수양부모, 자녀의 부모로서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보호인, 자녀의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권한의 보호인, 자녀와 살면서 양자로 들인 부모, 친부모의 역할을 하는 이(조부모, 양부모, 기타 친척), 자녀의 복지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 대리모)에 해당한다.

대리모는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정되어질 수 있다 - 공공기관이 논리적인 노력 이후로서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펜실베니아법에 의해 자녀가 주의 보호를 받는 경우, McKinney-Vento 무주택 지원 조항, 42 U.S.C. Sec. 11434a(6)에 의거해 집이 없는 상태의 홀로의 자녀 - . 공공기관은 대리부모로서 선정된 이가 SEA, LEA 혹은 자녀의 교육 혹은 관리에 관여하거나 대리부모가 표하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갈등을 이루는 개인적 혹은 전문적 관심을 보유하지 않거나 자녀의 적절한 대행을 확신하는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하는 기타 기관의 종업원이 아니도록 시행한다. 대리부모는 자녀의 파악, 평가, 교육적 배치를 비롯해 자녀에 FAPE 제공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하여 자녀를 대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자녀가 대리부모를 요한다고 결정한 30 일 이내로서 대리부모를 할당하도록 논리적인 노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B. 사전 서면 통지서란? (34 CFR §300.503)

본 조항은 LEA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조치에 대하여 귀하에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보하여야 하는 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1. 통지서가 요구되는 경우

귀하의 지역교육기관 (LEA) - 귀하의 자녀에 무료 적정 공공교육을 제공하는 단체 - 은 서면상으로 다음의 경우에 통지서를 발하여야 한다:

- a. 기관이 귀하의 자녀의 파악, 평가, 교육적 배치 혹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FAPE의 제공에 대하여 시행하거나 변경에 대하여 제시할 경우 혹은
- b. 기관이 귀하의 자녀의 파악, 평가, 교육적 배치 혹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FAPE의 제공에 대하여 시행하거나 변경에 대하여 거부할 경우.
- c. LEA가 시행하는 적정 과정 공청회 혹은 신속 적정 과정 공청회.
- d. LEA가 공비로서 독립 교육평가(IEE)에 대한 동의를 거부.

펜실베니아에 사전 서면 통지서는 LEA 사전 서면 통지서/추천되는 교육배치 통지서에 의하여 제공된다. 귀하는 본 제안서 혹은 거부서의 적정한 통지서를 제공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귀하가 LEA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된다. 적절한 통지서란 10 일을 의미한다.

2. 통지서에 대한 동의서

사전 서면 통지서는 :

- 1. 귀하의 LEA가 제시하고 거부하는 조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 2. 귀하의 LEA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3. 조치를 제시하고 거부하는데 결정함에 있어 귀하의 LEA가 사용한 각기 평가 과정, 평가, 기록, 보고서들을 기록하여야 한다;
- 4. IDEA의 B부의 절차 보호조항하 귀하가 보호됨을 포함하여야 한다 ;
- 5. 귀하의 LEA가 제시하거나 거부하는 조치가 평가에 대한 초기의 소개가 아닌 경우 귀하가 절차 보호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 6. IDEA의 B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귀하가 연락하는 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 7. 귀하의 자녀의 IEP 팀이 고려한 기타 선택사항 및 이들 선택안이 거부된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 8. 귀하의 LEA가 조치를 제시하거나 거부한 기타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3.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통지서

- a. 통지서는:

- 1) 일반인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 2) 귀하가 사용하는 모국어나 기타 의사소통의 방법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3) 귀하가 사용하는 모국어나 기타 의사소통의 방법이 작성 언어가 아닌 경우 귀하의 LEA 는 다음을 시행하여야 한다 :
  - a) 통지서가 귀하가 사용하는 모국어나 기타 의사소통의 방법으로서 통역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 b) 귀하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해한다; **그리고**
  - c) 1, 2 가 부합되었다는 서면상의 증거가 있다.

**C. 모국어란? (34 CFR §300.29)**

1. 제한적 영어 능통성을 가진 개인이 사용할 때 모국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해당인이 보통 사용하는 언어 혹은 어린이의 경우 자녀의 부모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
  - b. 어린이와의 전체적 직접적 접촉에 있어(어린이의 평가를 포함) 집이나 학습환경에서 자녀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
 시각, 청각장애인, 작성언어기술이 없는 이에 있어 의사소통방법은 본 해당인이 보통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수화, 브레일, 구술 대화와 같은).

**D. 전자메일에 의한 통보 (34 CFR §300.505)**

귀하의 LEA 가 부모에게 이메일로서 문서를 수령받는 선택안을 제공시에 귀하는 이메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령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

1. 사전 서면 통지서;
2. 절차 보호 통지서; **그리고**
3. 적정 절차 불평에 관련한 통지서.

**E. 부모 동의서란? (34 CFR §300.9)**

이 조항은 통보된 부모 동의서란 무엇이며 LEA 가 통지서에 제시된 바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언제 이를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1. 부모 동의서란?**

*동의란:*

- a. 동의를 요구되는 조치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귀하는 모국어나 기타 대화소통방법으로서 수령한 바가 있다 (수화, 브레일, 구술 대화법 등);
- b. 귀하는 서면상의 본 조치 및 본 조치와 통보가 되어지는 기록(해당시)의 목록서를 기술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면상으로 동의한다 ; **그리고**
- c. 귀하는 동의서가 귀하가 동의한 이후 귀하가 이를 철회하기 이전의 행동을 무효화하지 않는 것을 이해한다.

**F. 부모 동의안은 언제 요하는가?**

**1. 초기 평가 (34 CFR §300.300)**

- a. 일반 규칙: 초기 평가를 위한 동의서  
 귀하의 LEA 는 제시된 행동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서를 제공하여 **부모 동의서**라고 기재된 양식서에서 귀하의 동의 이후 귀하의 자녀가 IDEA 의 B 부에 의거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인인가를 결정하는 초기 평가를 시행할 수가 있다.

귀하의 LEA 는 귀하의 자녀가 장애아인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초기 평가에 대한 귀하의 통보된 동의서를 수령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취하여야 한다. 귀하의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서는 LEA 로 하여금 귀하의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또한

의미하게 되지 않는다. 귀하의 자녀가 공립학교에 등록하거나 귀하가 이를 시도하는 경우 그리고 귀하가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하기를 거부하거나 본 동의 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LEA 는 반드시는 아니나 조항의 중재 혹은 적정 절차 불평, 해결 회의, 공평 적정 절차 공청회 과정을 활용하여 귀하의 자녀에 대한 초기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귀하의 LEA 는 이러한 환경에서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자녀를 찾아 파악하고 평가할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것이 된다.

- b. 주의 피보호자에 대한 초기 평가의 특별 규정  
펜실베이니아법에 의거해 주의 피보호자로 지정된 아동의 경우는 부모를 찾을 수 없고 주법에 의거해 부모의 권한이 종료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닌 다른이가 지정되어 아동을 위한 교육적 결정을 판단하게 된다.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안은 해당 지정된 이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IDEA 에서 사용된 것처럼 주의 피보호자는 다음의 아동의 형태와 더불어 2 개의 다른 범위를 수반하게 된다 :

1. 양부모가 없는 양자녀;
2. 주법에 의거해 주의 피보호자로 고려됨; **혹은**
3. 공공자녀복지기관의 보호.

**2. 특별교육의 초기 배치에 대한 동의 (34 CFR §300.300)**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동의안*

최초에 귀하의 LEA 는 통지되어진 동의안을 수령한 이후 아동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LEA 는 최초에 아동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귀하로부터 통지되어진 동의안을 수령하도록 적절한 노력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귀하가 귀하의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최초에 수령하는데 대한 동의안의 요청서에 대하여 답변을 응하지 않거나 이의 동의안을 거부할 경우 귀하의 LEA 는 동의안 혹은 귀하의 자녀의 IEP 팀이 추천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귀하의 동의안없이 자녀에게 제공되어지는 판정안을 수령하기 위해 절차보호(예, 중재, 적절한 절차 불평, 해결안 회의, 공평한 적절 절차 공청회 등)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귀하가 귀하의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최초에 수령하는데 대한 동의안을 거부하거나 이의 동의안의 요청에 대한 답변에 응하지 않고 LEA 는 동의안의 내용인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귀하의 LEA 는:

1. Is not in violation of the requirement to make FAPE available to your child for its failure to provide those services to your child FAPE 를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하는데 대한 요구사항을 어겨 자녀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가 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리고**
2. IEP 회의를 통해 동의안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귀하의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EP 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3. 재평가에 대한 동의안 (34 CFR §300.300)**

*귀하의 LEA 는 귀하의 자녀를 재평가하기 위하여 귀하로부터 통지되어진 동의안을 수령하여야 한다.*

*이는 귀하의 LEA 가 다음의 상황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

1. 귀하의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안을 수령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단계를 거치었다 ; **그리고**
2. 귀하는 답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부모의 동의안을 수령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문서들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34 CFR §300.300)**

귀하의 LEA 는 최초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 재평가, 최초의 평가를 위한 주의 피보호자의 부모를 찾기 위하여 최초의 평가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동의안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문서들을 보관하여야 한다. 본 문서는 이러한 LEA 의 노력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로서 :

1. 전화통화 혹은 이에 대한 시도의 자세한 기록, 통화내용;
2. 부모에게 보내진 서신문 및 이들로부터의 답변; **그리고**
3. 부모의 자택이나 직장 방문에 대한 상세한 기록, 이들 방문내용.

5. 평가와 관련해 동의안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귀하의 LEA가 다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귀하의 동의안은 요구되지 않는다. :

1. 귀하의 자녀의 평가 혹은 재평가의 일부로서의 기존의 데이터를 검토; **혹은**
2. 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귀하의 자녀에게 시험 혹은 기타 평가안의 제공. 이는 평가 혹은 시험 이전에 동의안이 전 대상의 자녀의 부모로부터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귀하의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반드시 아니나 LEA는 중재, 적절 과정 불평, 해결안 회의, 공평한 적절 과정 공청회절차를 통하여 귀하의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귀하의 거부안을 기각하여 귀하의 자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수 있다. 초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LEA가 이러한 방식으로 재평가를 거절하는 경우 귀하의 LEA는 IDEA의 B 부에 의거해 의무에 대한 위반을 시행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귀하의 LEA는 하나의 서비스 혹은 활동에 대한 귀하의 거부안을 이용하여 귀하 혹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다른 서비스, 혜택안, 활동의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

7. 평가에 대한 동의안을 거부하는 경우?

a. 독립 교육평가 (34 CFR §300.502)

1) 일반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귀하가 귀하의 LEA에 의해 수령된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불찬성할 경우 귀하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독립교육평가(IEE)를 수령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귀하가 IEE를 요청할 경우 LEA는 귀하가 IEE를 수령할 장소 및 IEE에 적용되는 LEA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의

- a) 독립교육평가는 귀하의 자녀의 교육에 담당을 이루는 LEA에 의하여 고용되지 않는 자격증 소지의 검사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평가를 뜻한다.
- b) 공/비/란 LEA가 평가에 대한 총액을 지불하거나 IDEA의 B 부에 의거하여 평가가 무료로 귀하에게 제공되도록하는 것을 말한다. 본 법령은 각 주가 조항의 B 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주내에 주, 지역, 연방 혹은 민간 형태의 지원기관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t.

3) 공비로 평가를 할 부모의 권한

귀하가 귀하의 LEA에 의하여 수령되는 귀하 자녀의 평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사항의 조건으로서 귀하는 공비로서 귀하의 자녀에 대한 IEE에 관하여 권한을 보유한다. :

- a) 귀하가 공비로서 귀하의 자녀에 대하여 IEE를 요청할 경우 귀하의 LEA는 반드시 지체함이 없이 : (a)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가 적절함을 증명하는 공청회를 위한 적절 과정 불평을 제소하여야 한다. ; 혹은 (b) 공비로서 IEE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LEA가 공청회에서 귀하가 수령한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가 LEA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이다.
- b) 귀하의 LEA가 공청회를 요청하고 최종결정안이 귀하의 자녀에 대한 LEA의 평가가 적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귀하는 IEE에 대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나 공비의 형태가 아닌게 된다.
- c) 귀하가 귀하의 자녀에 대하여 IEE를 요청할 경우 LEA는 귀하의 LEA에 의해 수령된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를 귀하가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이유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귀하의 LEA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합리한 형식으로서 공비로서의 귀하의 자녀에 대한 IEE를 연기하거나 귀하의 자녀에 대한 LEA의 평가를 변호하기 위하여 적절 절차 공청회를 요청하는 적절 절차 불평을 제소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기할 수 없게 된다.
- d) 매회 귀하의 LEA가 귀하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귀하 자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때 귀하는 공비로서 귀하 자녀에 대한 단 한가지 IEE에 대한 권한만을 보유한다.

e) LEA 기준

IEE가 공비일 경우 평가 위치, 검사관의 자격을 포함하여 평가가 수행되는 기준안은 LEA가 평가를 시행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하여야 한다. (귀하의 IEE에 대한 권한과 부합하는 기준에 해당되기까지).  
위에 기재한 기준을 제외하고 LEA는 공비로서 IEE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조건 혹은 일정을 부여할 수 없다.

b. 부모가 시행하는 평가

귀하가 귀하의 자녀에 대한 IEE를 공비로서 수행하는 경우 혹은 사비로서 귀하가 수행한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를 LEA와 공유하는 경우 :

- 1) 귀하의 LEA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의 경우 귀하의 자녀에 대한 FAPE의 제공에 관한 결정안에 있어 상기 결과물이 IEE에 대한 LEA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그리고
- 2) 귀하 혹은 귀하의 LEA는 귀하의 자녀에 관한 적절 과정 공청회에서의 증명안으로서 평가안을 제시할 수 있다.

c. 공청회 사무관에 의한 평가에 대한 요청

공청회 사무관이 귀하의 자녀에 대한 IEE를 적절 과정 공청회의 일부로서 요청하는 경우 평가비는 공비이어야 한다.

**G. 개인신분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안 (34 CFR §300.622)**

교육기록에 정보가 포함되고 정보의 노출이 FERPA에 의해 부모의 동의없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귀하의 동의안은 개인신분정보가 참여기관의 사무관 이외의 당사자들에 노출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래 기재된 상황을 제외하고 귀하의 동의안은 IDEA의 B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 참여기관의 사무관에게 개인신분정보가 노출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귀하의 동의안 혹은 주법에 의거해 성년에 도달한 자격 아동으로부터의 동의안은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지불을 행사하는 참여기관의 사무관에게 개인신분정보가 노출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귀하의 자녀가 귀하가 거주하는 동일한 LEA에 위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이를 계획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안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신분정보가 사립학교가 위치하는 LEA의 사무관과 귀하가 거주하는 LEA의 사무관 사이에 노출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II. 기밀정보

A. 나의 자녀와 관련하여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이는 누구에 해당하는가? (34 CFR §300.611)

1. 정보의 기밀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의가 내려진다:

- a. **파괴**는 정보로부터 물리적 파괴 혹은 개인신분정보 파악의 가능성의 제거를 뜻하여 정보가 신분파악에 이용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 b. **교육기록**이란 34 CFR 부 99 (1974, 20 U.S.C. 1232g (FERPA)의 가족 교육권한 및 프라이버시 조항 실행에 관한 규정)하 “교육기록”의 정의에 의하여 속하게 되는 기록의 유형을 뜻한다.
- c. **참여기관**이란 IDEA의 B 부에 의거하여 정보가 이용되게 되는 개인신분정보를 수집, 유지, 사용하는 LEA, 기관 혹은 조직체를 뜻한다.
- d. **개인신분파악(34 CFR §300.32)**이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한다:
  - 1) 귀하의 자녀의 이름, 귀하의 부모로서의 이름, 다른 가족일원의 이름;
  - 2) 귀하의 자녀의 주소;
  - 3) 귀하의 자녀의 사회보장번호 혹은 학생번호와 같은 개인신분 파악정보; **혹은**
  - 4) 귀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상의 특성 등에 대한 기록.

2. 접근권한 (34 CFR §300.613)

a. 부모접근

LEA는 귀하로 하여금 IEA의 B 부에 의거, 귀하의 LEA에 의하여 수집, 보관, 이용된 귀하의 자녀에 관한 교육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참여기관(LEA로 변경?)은 연체없이 혹은 요청이 있고서 45일 역일 이내로서 혹은 IEP에 관한 회의, 공평 적절 절차 공청회(해결안 회의 혹은 규율에 관한 공청회 포함)없이 귀하의 귀하의 자녀에 관한 교육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하고자 하는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1) 귀하의 교육기록에 대한 검사 및 검토에 대한 권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반한다:
- 2)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에 관해 귀하의 적절한 요청서에 대하여 참여 기관으로부터 답변안에 대한 귀하의 권한;
- 3) 기록을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귀하가 효과적으로 기록에 대하여 검사, 검토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참여기관이 기록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귀하의 권한; **그리고**
- 4) 귀하의 대변인을 통하여 기록에 대하여 검사, 검토할 수 있는 귀하의 권한.
  - a) 참여기관은 귀하의 자녀에 관하여 기록에 대하여 검사, 검토할 권한이 있음을 추정한다. 이는 보호임무, 별거, 이혼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해당주법에 의거하여 귀하가 이같은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서이다.
  - b) **교육기록이 한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이들 자녀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서만의 정보에 대하여 검사, 검토, 통지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c) 요청에 의거하여 각 참여기관은 기관에 의하여 수집, 보유, 사용된 **교육기록의 유형 및 위치**에 대한 목록서를 본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기타 권한의 접근 (34 CFR §300.614)

각 참여기관은 IDEA의 B 부에 의거, 수집, 보유, 사용된 교육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유하는 당사자(부모 및 참여기관의 허용된 종업원으로부터의 접근을 제외)의 이름, 접근일, 기록을 사용하는 당사자의 목적을 포함하는 당사자에 관한 기록들을 보유하여야 한다.

3. 비용

비용이 귀하의 이들 기록에 대한 검사, 검토에 관한 권한 행사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경우 각 참여기관은 IDEA의 B 부에 의거 귀하에 제공되는 기록의 복사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34 CFR §300.617).

참여기관은 IDEA의 B 부에 의거, 정보를 제공, 검색하기 위한 작업에 관하여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4. 부모의 요청에 의한 기록의 수정 (34 CFR §300.618)

귀하가 IDEA의 B 부에 의거, 수집, 보유, 사용된 귀하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록 정보가 부정확, 오류, 귀하의 자녀에 대한 프라이버시 혹은 기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길 경우 본 정보를 보유하는 참여기관에 정보의 변경에 대한 요청을 시행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귀하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적절한 기간이내에 이에 따른 정보의 변경 시행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여기관이 귀하의 요청에 의한 정보의 변경을 부인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귀하에 통지하여야 하며 본인의 이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할 권한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기록 공청회에 대한 기회 (34 CFR §300.619)**

LEA는 귀하의 요청에 의거해 교육기록 정보가 부정확, 오류, 귀하의 자녀에 대한 프라이버시 혹은 기타의 권한을 침해함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의 자녀의 교육기록에 대한 정보의 변경을 위한 공청회의 기회를 귀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공청회 절차 (34 CFR §300.621)**

교육기록내용의 변경에 대한 공청회는 1974, 20 U.S.C. 조항 1233g (FERPA)의 가족교육권한 및 프라이버시항에 의거해 이의 공청회를 위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 1) 교육기관 혹은 조직체는 학부모 혹은 자격학생으로부터 청문회에 대한 요청서를 입수한 뒤 적절한 기간 이내에 공청회를 열도록 한다.
- 2) 교육기관 혹은 조직체는 공청회로부터 적절한 시기 이전에 일자, 시간, 장소에 관하여 학부모 혹은 자격학생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공청회는 공청회의 결과에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교육기관 혹은 조직체의 사무관을 포함한 기타인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진다.
- 4) 교육기관 혹은 조직체는 학부모 혹은 자격학생에 학생의 교육기록에 대한 변경요구를 위한 목적으로서의 정보가 부정확, 오류, 귀하의 자녀에 대한 프라이버시 혹은 기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전적이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부모 혹은 자격학생은 자비로서 자신들이 선택하게 되는 변호사를 포함한 1명 이상의 대변인을 수반할 수 있다.
- 5) 교육기관 혹은 조직체는 공청회 이후 적절한 시기 이내에 서면으로서 결정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 6) 결정안은 공청회에 제출된 증거안을 바탕으로서만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증거의 요약, 결정안의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b. 공청회 결과 (34 CFR §300.620)**

공청회 이후 참여기관이 정보가 부정확, 오류, 귀하의 자녀에 대한 프라이버시 혹은 기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들 변경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서 귀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청회 이후 참여기관이 정보가 부정확, 오류, 귀하의 자녀에 대한 프라이버시 혹은 기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성격임을 판정할 경우 귀하는 자녀의 기록상에 귀하의 자녀의 정보에 대한 의견안, 참여기관의 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

귀하의 자녀의 기록상에 이같은 설명안은 :

1. 문제가 되는 기록의 일부가 참여기관에 의해 보존되는 동안 귀하의 자녀의 기록의 일부로서 참여기관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 그리고
2. 참여기관이 자녀의 기록 혹은 문제되는 부분을 다른 당사자에게 노출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설명안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c. 보호 (34 CFR §300.623)**

각 참여기관은 수집, 보관, 노출, 파괴의 단계에서 개인신분정보에 관한 기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각 참여기관내의 한 명의 사무관은 개인신분정보의 기밀성을 위한 담당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인신분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전 인원은 IDEA, FERPA 의 B 부에 의거, 기밀성과 관련한 해당 주의 정책, 절차에 관한 연수, 지시사항을 제공받아야 한다.

공공검사의 실행을 위하여 각 참여기관은 개인신분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기관내 종업원의 이름, 직함에 대한 업데이트된 목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6. 정보의 파괴 (34 CFR §300.624)**

PROCEDURAL SAFEGUARDS NOTICE

귀하의 LEA 는 수집, 유지, 사용된 개인신분정보가 귀하의 자녀에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요구되지 않을 경우 이를 귀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정보가 귀하의 요청에 의거하여 소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귀하의 자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년, 출석기록, 참석학급, 최종 학년, 최종년도에 대한 영구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III. 주 불평 절차 (34 CFR §§300.151-153)**

**A. 적정 절차 공청회 불평과 주 불평 절차의 차이**

IDEA의 B부의 규정은 주 불평과 적정 절차 불평 및 공청회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한다. 아래 기재된 바와 같이 개인이나 조직체는 LEA, 주 교육기관 혹은 기타 공공기관에 의한 B부 규정사항의 위반에 관한 주 불평안을 제소할 수 있다. 귀하나 LEA만이 장애아동의 신분정보, 평가, 교육배치에 대한 변경 혹은 시행에 관한 제시안, 거부안 혹은 자녀에 대한 FAPE의 제공과 관련하여 적정 절차 불평안을 제기할 수 있다. 주교육기관의 요원이 60일 역일 기간이내에 이 주 불평안을 해소하여야하는 반면 (시기가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 본 문서의 해소절차 항목의 기재사항과 같이 공평 적정 절차 공청회 사무관은 공청회를 열고 (해결한 회의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청회사무관이 귀하 혹은 LEA의 요청에 의거하여 시한연장을 수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해소기간의 말미 이후 45일 역일 이내에 서면상으로 결정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주 불평 혹은 적정 절차 불평안, 해소안과 공청회 절차는 아래 보다 자세히 기재되었다.

**B. 주 불평안을 어떻게 제소하나요? (34 CFR §300.153)**

개인이나 조직체는 서명이 든 서면상의 주 불평안을 제소한다.

주 불평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반하여야 한다:

1. LEA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 IDEA의 B부의 규정사항 혹은 요구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
2. 이들 사실에 대한 근거;
3. 공소인의 서명, 연락처; 그리고
4. 특정 자녀에 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해당 자녀의 이름, 주소;
5. 자녀가 다니는 학교이름;
6. 무주택 자녀 혹은 청소년의 경우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
7. 사실 근거를 포함한 자녀의 문제에 관한 내용; **그리고**
8. 불평안이 제소된 당시의 고소인이 인식하는 바의 제시되어진 문제 해결 제시안.

주 불평절차의 채택 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불평안은 불평안이 수령되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위반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주 교육기관에 주 불평안을 제소하는 당사자는 동시에 자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불평안의 복사안을 LEA 혹은 기타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평안의 제출처:

Departments of Public Welfare and Education  
 Office of Child Development and Early  
 Learning Bureau of Early Intervention  
 333 Market Street, 6<sup>th</sup> Floor  
 Harrisburg, PA 17126-0333  
 Email: [ra-ocdintervention@state.pa.us](mailto:ra-ocdintervention@state.pa.us)  
 Fax: (717)346-9330

**a. 절차**

**1) 불평안이 제소된 이후 60일 역일의 시한동안의 사항:**

1. 주 교육기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독립현장 검증의 수행;
2. 고소인에게 구술이나 서면상으로서 불평안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3. 다음 사항을 **최소한** 포함하여 LEA 혹은 기타 공공기관에 불평안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a) 기관의 재량으로서 불평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시안; (b) 불평안을 제소한 부모와 중재에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는 기관에 대한 기회
4. 관련정보를 검토하고 LEA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 IDEA의 B부의 요구사항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내림;

5. 다음을 포함하여 불평안의 각기 내용을 거론하는 고소인에게로의 서면상의 결정안을 작성: (a) 사실습득과 결론 ; (b) 주 교육기관의 최종결정안에 대한 근거.

**2) 시한 연장;최종 결정안; 실행**

- a) 60 일 역일의 시한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특정 주 불평안에 관하여 특정 상황이 처해있는 경우; 혹은 (b) 부모, LEA 혹은 기타 참여공공기관이 중재나 분쟁 해결에 대한 대체방법(주내에 가능한 경우)을 통하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한을 연장할 것에 동의.
- b) 필요시에 다음을 포함하여 주 교육기관의 최종적 결정안은 효과적인 실행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기술 지원 활동; (b) 논의; (c) 순응과정을 위한 교정조치.

**3) 걱정 서비스의 거부에 대한 구제책**

주교육기관이 걱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주 불평안의 해결방법에 있어 주 교육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을 다루어야 한다:

- a) 자녀의 요구사항에 적절한 교정 조치를 포함하여 걱정 서비스의 제공의 불실행; 그리고
- b) 전체 장애아동을 위한 앞으로의 적절한 형태의 서비스의 제공.

**4) 주 불평안과 걱정 절차 공청회**

아래 기재된 **걱정 절차 불평안의 제소** 항목과 같이 걱정 절차 공청회의 대상이기도 한 서면상의 주 불평안이 수령되면 혹은 주 불평안내에 1 개 이상의 문제안이 이같은 공청회의 일부가 되는 다수형태상의 이슈를 거론하면 주는 공청회가 마감될 때까지 주 불평안 혹은 걱정 절차 공청회에 거론되고 있는 주 불평안의 일부가 되는 부분을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걱정 절차 공청회의 일부가 아닌 주 불평안내의 문제안들은 위에 기재된 시한과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주 불평안에 제기된 문제안들이 동일 당사자(귀하와 LEA)를 수반하는 걱정 절차 공청회에 결정된 안건들인 경우 걱정 절차 공청회 결정안은 해당 문제안에 구속력을 갖추며 주 교육기관은 고소인에게 결정안이 구속력이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LEA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 걱정 절차 공청회 결정안을 시행하지 못함에 대한 불평안은 상기 기재된 절차에 의거해 주 교육기관이 해결하여야 한다.

IV. 적정 절차 불평안의 절차

A. 적정 절차 공청회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

1. 적정 절차 불평안의 제출 (34 CFR §300.507)

일반

귀하나 LEA 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신분파악, 평가 혹은 교육 배치/귀하의 자녀에 대한 FAPE 의 제공의 변경에 대한 제시안 혹은 거부안과 관련하여 적정 절차 불평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적정 절차 불평안은 귀하나 LEA 가 인지한 일자 혹은 적정 절차 불평안의 근거를 형성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이들이 인지할 수 있었던 일자로부터 2 년 이내에 행해진 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가 적정 절차 불평안을 기한내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 상기 기한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

1. LEA 가 구체적으로 불평안에 제시된 안건들이 해결되었다고 잘못 지적한 경우; 혹은
2. LEA 가 IDEA 의 B 부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제공되었어야 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에 대한 정보

귀하의 정보요청에 의거하여 혹은 귀하 혹은 LEA 가 적정 절차 불평안을 제출하는 경우 LEA 는 지역내 무료 혹은 저렴한 형태의 법적 혹은 기타 관련 서비스에 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B. 적정 절차 불평안의 내용 (34 CFR §300.508)

1. 일반

공청회의 요청을 위해 귀하나 LEA(혹은 귀하의 변호사, LEA 의 변호사)는 적정 절차 불평안을 상대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불평안은 아래 기재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불평안을 제기한 귀하나 LEA 가 상대 당사자에게 적정 절차 불평안을 제공할 시에 이의 복사본이 분쟁 해결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불평안의 내용

적정 절차 불평안에 포함되어야할 내용들로서:

- a. 자녀 이름;
- b. 자녀 주소;
- c. 자녀 학교;
- d. 자녀 혹은 청소년이 거주지가 없는 경우 현재의 연락처와 학생의 학교명 ;
- e. 문제와 관련한 사실근거들을 포함하여 제시된 혹은 거부된 조치안과 관련한 자녀의 문제내용; 그리고
- f. 당시에 귀하나 LEA 에 알려진 정도로서의 문제에 대한 제시된 해결안.

3. 적정 절차 불평안에 대한 공청회 이전에 요구되는 통지서

귀하나 LEA 는 귀하나 LEA(혹은 귀하의 변호사, LEA 의 변호사)가 상기 기재된 정보를 포함하는 적정 절차 불평안을 제소하기까지 적정 절차 공청회를 열지 않게 된다.

4. 불평안의 충분성

적정 절차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불평안은 충분한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적정 절차 불평안(귀하 혹은 LEA)을 수령하는 당사자가 공청회 사무관과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상으로, 불평안을 받은지 15 일 역일 이내로서, 적정 절차 불평안이 상기 기재된 요구조건을 따르지 않는다고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적정 절차 불평안은 (상기 기재된 요구사항을 따라) 충분한 형태로서 고려되어진다.

통지서를 받은 후로부터 5 일 역일 이내에 공청회 사무관이 적정 절차 불평안이 상기 기재된 요구조건을 따르는지에 대하여 결정하여 귀하와 LEA 에게 서면상으로 이를 즉시 통보하는 경우 수령 당사자(귀하나 LEA)는 적정 절차 불평안을 불충분한 것으로 고려한다.

5. 불평안의 수정

귀하 혹은 LEA 는 다음의 경우에 불평안에 대한 변경을 조정할 수 있다:

- a. 상대 당사자가 서면상으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하고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해결안 회의를 통하여 적정 절차 불평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경우; **혹은**
- b. 적정 절차 공청회가 시작되는 일로부터 5 일 안으로서 공청회 사무관이 변경에 대한 허용을 수락하는 경우.

불평 당사자(귀하 혹은 LEA)가 적정 절차 불평안에 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 해결안의 회의의 시한(불평안을 수령한 일로부터 15 일 역일 이내)과 해결안의 시한(불평안을 수령한 일로부터 30 일 역일 이내)은 수정된 불평안이 제출된 일자로부터 다시 계산되어지게 된다.

**6. 적정 절차 불평안에 대한 LEA 답변**

LEA 가 귀하에게 사전의 서면 통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사전 통보 조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귀하의 적정 절차 불평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LEA 는 불평안을 수령한 일로부터 10 일 역일 이내 귀하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답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a. 적정 절차 불평안에 제기된 조치안을 LEA 가 제시하거나 거부한 이유;
- b. 귀하의 자녀의 IEP 팀이 고려한 기타 선택안 및 이러한 선택안이 거부된 이유;
- c. LEA 가 제시되거나 거부된 조치안의 근거로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보고서의 내용 ; **그리고**
- d. LEA 의 제시되거나 거부된 조치안과 관련한 기타 요소.

위의 항목 1 - 4 에서 제공되는 정보로서 LEA 가 귀하의 적정 절차 불평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지 않는다.

**7. 적정 절차 불평안에 대한 상대 당사자의 답변**

**적정 절차 불평안에 대한 LEA 의 답변인** 바로 위의 부제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적정 절차 불평안을 수령하는 당사자는 불평안을 수령한 일로부터 10 일 역일 이내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불평안내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관한 답변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C. 해결 과정 (34 CFR §300.510)**

**1. 해결안 회의**

귀하의 적정 절차불평안을 수령한 일로부터 15 일 역일 이내 그리고 적정 절차 공청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LEA 는 귀하와 귀하의 적정 절차 불평안에 제시된 내용에 관한 지식을 갖추는 IEP 팀의 관련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는:

- a. LEA 를 대신하여 결정권한이 있는 LEA 의 대표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 b. 귀하가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는한 LEA 의 변호사를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귀하와 LEA 는 회의에 참석하게 될 IEP 팀의 관련임원을 지명한다. 회의의 목적은 귀하가 귀하의 적정 절차 불평안, 불평안의 근거사실에 대하여 의논하여 LEA 가 분쟁안을 해결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에 있다.
- c. 다음의 경우 해결안의 회의는 불필요하다:
  - 1) 귀하와 LEA 는 서면상으로 회의에 대한 포기에 관하여 동의한다; **혹은**
  - 2) **중재**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귀하와 LEA 는 중재 과정을 사용할 것에 동의한다.

**2. 해결안 기간**

LEA 가 적정 절차불평안을 수령한 일로부터 30 일 역일 이내(해결안 과정의 시한내) 귀하에 만족하는 적정절차 불평안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적정 절차 공청회가 발생한다.

최종결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45 일의 역일기간은 해결안의 30 일의 역일기간이 만료되는 때로부터 시작된다. 아래 기재된 바와 같이 해결안의 30 일 역일 기간에 대한 조정의 경우 이는 제외된다.

귀하와 LEA 가 모두 해결안의 과정을 포기하거나 중재안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해결안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가 회의에 참석할 것에 동의할 때까지 해결안 과정과 적정 절차 공청회의 시한이 연기되게 된다. LEA 가 적절한 노력의 시행과 이러한 노력에 관한 문서화 이후에도 귀하를 해결안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LEA 는 30 일 역일 결의안 시한 말미에 공청회 사무관이 귀하의 적정 절차 불평안을 무효화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 관한 문서화는 다음과 같이 상호 동의하는 형의 시간, 장소를 정하는 LEA 의 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 전화통화 혹은 이에 대한 시도의 자세한 기록, 통화내용;
- 2. 귀하에게 보내진 서신문 및 이들로부터의 답변; **그리고**
- 3. 귀하 자택이나 직장 방문에 대한 상세한 기록, 이들 방문내용.

LEA가 적정 절차불평안을 수령한 일로부터 15일 역일 이내로서 해결안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경우 **혹은** 해결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공청회 사무관으로 하여금 45일 적정 절차 공청회 시한이 시작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30일 역일 해결안의 기한에 대한 조정**

귀하와 LEA가 서면상으로 해결안 회의에 대한 포기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45일 역일의 적정 절차 공청회의 기한은 본 해당일 다음날로서 시작되게 된다.

중재 혹은 해결안 회의 시작 이후와 30일 역일의 해결안 기한 이전에 LEA와 귀하가 서면상으로 동의안이 불가능하다고 합의하는 경우 적정 절차 공청회의 45일 역일 시한이 다음날로서 시작되게 된다.

LEA와 귀하가 중재과정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는 경우 적정 절차 공청회의 30일 역일 시한의 말에 양 당사자는 동의안에 이르기까지 서면상으로 중재과정을 지속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LEA와 귀하 중 한 당사자가 중재과정을 철회하는 경우 적정 절차 공청회의 45일 역일 시한은 다음날로서 시작되게 된다.

**4. 서면상의 해결동의서**

분쟁에 대한 해결안이 해결안 회의에서 이루어질 경우 LEA와 귀하는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a. 귀하와 LEA의 구속력에 대한 권한을 지닌 LEA의 대표인의 서명
- b. 동의서 검토기간 - 귀하와 LEA가 해결안의 회의 결과로서 동의안을 작성할 경우 이들 중 한 당사자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동의서 일자로부터의 3일 근무일 이내로서 동의서를 무효화할 수 있다.

V. 적정 절차 불평안에 대한 공청회

A. 공평한 적정 절차 공청회(34 CFR §300.511)

1. 일반

적정 절차 불평안이 제소되는 경우 분쟁에 관여된 귀하나 LEA 는 **적정 절차 불평안과 해결과정** 조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평한 적정 절차 공청회로부터의 기회를 보유하게 된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적정 절차 시스템은 분쟁 해결사무소에 의하여 관리된다. (기관항목에 기재)

2. 공평한 공청회 사무관

공청회 사무관은 최소한의 형태로서:

- a. 자녀의 교육이나 관리에 관여하는 주 교육기관이나 LEA 의 종업원임을 금한다. 그러나 기관에 의해 공청회 사무관으로서 지불되는 경우로서 이의 해당인은 기관의 종업원이지만 아니다.
- b. 공청회내 공청회 사무관과 객관적인 형태로서 상충하는 개인적 혹은 전문적 관심사를 보유하여서는 안된다;
- c. 지식을 보유하며 IDEA 의 조항, IDEA 와 관련한 주 및 연방 규정, 연방 및 주법정에 의한 IDEA 의 법적 해석안을 이해하여야 한다 ; 그리고
- d. 공청회에 관한 지식과 공청회의 시행능력, 적절한 표준 법적 실행에 따른 결정안을 내리고 작성하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각 SEA 는 각 사무관의 자격조건을 포함하는 공청회 사무관의 목록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적정 절차 공청회의 안전

상대 당사자의 동의없이 적정 절차 공청회를 요청하는 당사자(귀하나 혹은 LEA)는 적정 절차 공청회에서 적정 절차 불평안에 제기되지 않은 항목을 제기할 수 없다.

4. 공청회의 요청시한

a. 시한

귀하나 LEA 는 귀하나 LEA 가 인지하게 된 일자 혹은 불평안에 제기된 안전들을 알 수 있었던 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적정 절차 불평안에 대한 공평한 공청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적정 절차 불평안은 귀하나 LEA 가 인지한 일자 혹은 적정 절차 불평안의 근거를 형성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이들이 인지할 수 있었던 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행해진 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시한에 대한 예외

다음의 이유로서 귀하가 적정 절차 불평안을 제소할 수 없었을 경우 상기 일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1. LEA 가 구체적으로 귀하가 불평안에 제시한 안전들이 해결되었다고 잘못 지적한 경우; 혹은
- 2. LEA 가 IDEA 의 B 부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제공되었어야 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B. 공청회 권한 (34 CFR §300.512)

1. 일반

부제 **결정안에 대한 항소; 공평한 검토**에 기재된 대로 적정 절차 공청회(규율 절차에 관련한 공청회를 포함) 혹은 항소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 a. 장애아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와(혹은) 특수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이를 동행하거나 이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 b. 증거를 제출, 반박, 반대신문하고 증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c. 공청회로부터 적어도 5일 근무기간 이전으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제시되어지지 않은 증거물의 공청회에 대한 소개;
- d.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서면상, 전자형식, 공청회 기록의 입수; 그리고
- e. 자신이 선택하여 서면상이나 전자형식의 사실근거와 결정안의 입수.

2. 추가 정보의 공개

적정 절차 공청회로부터 적어도 5 일 근무일 이전에 귀하와 LEA 는 당사자 모두에게 해당일까지 작성된 전 평가서, 귀하 혹은 LEA 가 공청회에서 사용하게 될 평가안을 기반으로 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청회 사무관은 이들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 당사자의 경우 상대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청회상에서 관련 평가안이나 추천서를 소개할 수 없도록 한다.

3. 공청회에서의 부모의 권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소지하여야 한다:

- a. 공청회 주 대상인 자녀의 동반;
- b. 공공에게 공청회의 공개; 그리고

C. 공청회 결정 (34 CFR §300.513)

1. 공청회 사무관의 결정

- a. 귀하의 자녀가 FAPE 를 받았는지에 대한 공청회 사무관의 결정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b. 절차상의 위반에 관한 문제에서 절차의 부적성으로 인한 다음 사항으로 인하여서만 공청회 사무관은 귀하의 자녀가 FAPE 를 수령하지 않았음을 알게 될 수 있다.:
  - 1) 귀하의 자녀의 FAPE 에 대한 권한에 장애;
  - 2) 귀하의 자녀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한 결정안의 절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하의 기회제공에 크나큰 장애; 혹은
  - 3) 교육 혜택의 박탈의 원인.

c. Construction clause

상기 기재된 사항은 공청회 사무관이 LEA 에게 IDEA 의 B 부에 기재된 절차 보호조항(34 CFR §§300.500 - 300.536)의 요구조건을 응하는데 대한 장애 요인으로서 해석될 수 없다. 적정 절차 불평안의 제소; 적정 절차 불평안, 양식서, 해결안 과정, 공평한 적정 절차 공청회, 공청회 권한, 공청회 결정안 (34 CFR §§300.507 - 300.513)의 사항들은 적절한 사법권한을 지니는 법정과의 적정 절차 공청회 결정안에 대한 항소를 행하는 귀하의 권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 적정 절차 공청회에 대한 별도의 요청서

IDEA 의 B 부에 기재된 절차 보호조항(34 CFR §§300.500 - 300.536)하의 연방 규정의 절차 보호조항은 이미 제소된 적정 절차 불평안으로부터 별도의 형태로서 적정 절차 불평안을 제소하는 것의 장애요인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3. 자문 위원회와 일반 공중에 대한 발견물과 결정안

개인신분정보의 삭제 이후 SEA 는 :

- a. 적정 절차 공청회나 항소안의 발견물과 결정안을 특수 교육 자문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 b. 이러한 발견물과 결정안을 공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D. 최종 결정안; 항소; 공평한 검토 (34 CFR §300.514)

최종공청회 결정안

공청회에 참여한 당사자(귀하 혹은 LEA)가 결정안에 대하여 적임의 사법권한을 지닌 법정에 항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정 절차 공청회(규율 절차와 관련한 공청회 포함)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최종적이다.

E. 공청회의 시한과 편의성 (34 CFR §300.515)

1. 시한

SEA 는 해결안 회의의 30 일 역일 시한으로부터 45 일 역일 안으로 혹은 30 일 역일 해결안 기한에 대한 조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공청회에서 최종 결정안이 작성됨; 그리고
- b. 결정안의 복사본이 귀하와 LEA 에게 발송됨.

**2. 시한의 연장**

귀하 혹은 LEA가 구체적으로 시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공청회 혹은 검토 사무관은 위에 기재된 기한(공청회 결정을 위한 45일 역일, 검토 결정을 위한 30일 역일)으로부터 연장기한을 시행할 수 있다. 기술적 형태의 분쟁이 관여되는 각 공청회는 귀하 혹은 귀하의 자녀에게 편의한 형태로서 시간과 장소가 주어져야 한다.

**F. 소송을 제소하는 기간을 포함한 민사 소송 (34 CFR §300.516)**

**1. 일반**

SEA의 결정안의 발견물과 결정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귀하 혹은 LEA)는 적정 절차 공청회(규율 절차와 관련한 공청회 포함)의 안전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 제소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다. 당 소송은 분쟁내의 금액과 관련없이 미국지역 법정 혹은 적임의 권한을 보유하는 주법정(이러한 사례를 경청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주 법정)에 제기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적임의 권한을 보유하는 법정은 주법정에 속한다.

**2. 시한**

미국지역 법정에 제소하는 당사자는 (귀하 혹은 LEA)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SEA의 결정안의 일자로부터 90일의 역일을 보유한다. 주법정에 소송을 제소하는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SEA의 결정안의 일자로부터 30일의 역일을 보유한다.

**3. 추가 절차**

**민사 소송에 있어 법정은:**

1. 관리 절차의 기록을 수령한다;
2. 귀하 혹은 LEA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물에 대하여 경청한다; **그리고**
3. 결정안을 압도적인 증거물에 대하여 내리며 법정이 적정하다고 결정하는 구제자금을 부여한다.

**4. 구성의 권한**

IDEA의 B부의 조항은 미헌법, 1990 장애 미국인 조항, 1973의 재활 조항의 표제 5(504 조항) 혹은 기타 장애아동의 권한을 보호하는 연방법에 의한 권한, 절차,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는 IDEA의 B부의 조항에 의거하여 유용한 구제기금을 추구하고, 이들 법에 의거해 민사소송의 제소 이전에 상기 기재된 적정 절차 과정이, IDEA의 B부의 조항에 의거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요구되는 것과 동일 한 정도로서 소모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이다. 이는 기타법에 의거하여 IDEA하에 가능한 것들과 겹치는 구제책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 기타법에 의하여 구제책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IDEA에 의거해 가능한 사항들을 먼저 소모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에 들어서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기타법에 의하여 구제책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IDEA에 의거해 가능한 관리구제책(적정 절차 불평안, 해결안 회의, 공평한 적정 절차 공청회 절차)을 소모하여야 한다. 이는 관리 구제책을 무모하게 하는 특정한 사법적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G. 변호사 비 (34 CFR §300.517)**

**1. 일반**

IDEA의 B부의 조항에 의거해 제기된 소송이나 절차에 있어 법정은 재량에 따라 다음 해당인에 대한 총비용의 일부로서 적절한 변호사비를 부여할 수 있다 :

- a. 귀하 - 귀하가 주된 경우.
- b. 주된 주 교육 기관 혹은 LEA - 변호사가 지불하는 형식, 이는 변호사가 : (a) 법정에서 불성실하고 비논리적이며 근거박약이라고 보여지는 불평안이나 법정 사례를 제소한 경우; **혹은** (b) 소송이 불성실하고 비논리적이며 근거박약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소송을 거는 형태 ; **혹은**
- c. 주된 주 교육 기관 혹은 LEA - 귀하 혹은 변호사가 지불하는 형식, 귀하의 적정 절차 공청회 혹은 후의 법정 사례에 대한 요청서가 강요, 불필요한 연기의 초래, 불필요한 소송 혹은 절차비의 증가와 같은 부적절한 목적으로서 제시된 경우.

2. 적정비

법정은 다음에 따르는 적절한 변호사비를 부여한다:

- a. 비용은 필요한 형태와 종류의 서비스를 위하여 소송이나 공청회가 행해지는 지역사회에 일반적인 요금을 기반으로 한다. 비용 부과의 계산에 있어 보너스나 승수가 사용되지 않는다.
- b. 다음의 7명우 귀하에 서면상의 해결안의 제공 이후 서비스에 대하여 IDEA의 B 부에 의거, 소송이나 절차에 있어 비용은 부여되지 않으며 관련비는 상환되지 않는다. :
  - 1) 제공이 민사 절차의 연방 규정 68에 기재된 시한내에 혹은 적정 절차 공청회나 주급 검토안의 경우에 있어 소송시작의 10일 역일 이후에 행해진 경우;
  - 2) 제공이 10일 역일 이내에 수령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 3) 법정 혹은 관리 공청회 사무관이 귀하가 최종으로 수령한 구제금액이 합의금보다 보다 귀하에게 우호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4) 이들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합의금을 거부하는데 있어 우세하며 충분히 정당하고 보여질 경우 변호사비 및 관련비가 귀하에게 제공되진다.
- c. 회의가 관리소송 혹은 법정 소송의 결과로서 진행되지 않는한 IEP 팀의 회의와 관련하여 비용은 부여되지 않는다. 결의안 회의 부재하에 기재된 대로 결의안 회의는 관리 청문회나 법정 소송에 의한 결과로 소집된 회의로서 간주되지 않으며 이들 변호사 비용의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관리 청문회나 법정 소송으로서 또한 간주되지 않는다.
- d. 중재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용은 중재를 위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3. 비용의 감소

법정이 다음 사항에 입각하여 IDEA의 B 항에 의거, 해당시에 법정은 변호사 비용을 감축한다. :

- a. 귀하나 귀하의 변호사가 소송이나 절차의 과정 중 불합리하게 분쟁의 최종 결의안을 연기시행하였다;
- b. 부여되게 되는 변호사비의 금액이 비슷한 서비스 혹은 합리적으로 비슷한 기술, 명성, 경험에 관한 지역사회내의 시간율을 비합리적으로 초과한다. ;
- c. 소송이나 절차를 고려하여 볼 때 할당된 시간과 제공된 법적 서비스가 지나치다고 간주됨; 혹은
- d. 적정 절차 불평안에 기재한대로서 적정절차 요청 통지서에 귀하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LEA에 적정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법정이 주나 LEA가 비합리적으로 소송이나 절차에 대한 최종 결의안을 연기하였거나 혹은 IDEA의 B 조항에 의거하여 절차보호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법정은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H. 양식서 (34 CFR §300.509)

주 교육 기관이 귀하로 하여금 적정 절차 불평안과 주 불평안을 제소할 수 있는 지원 형태의 양식서를 개발하는 반면에 SEA, 혹은 LEA는 이들 양식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양식서가 적정 절차 불평안 혹은 주불평안을 제소하기 위해 요청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귀하는 이 양식서 혹은 기타 적정 형태의 양식서를 사용할 수 있다.

**VI. 중재 (34 CFR §300.506)**

**A. 일반**

SEA 는 귀하와 LEA 가 적정 절차 불평안의 제소이전에 일어나는 문제를 포함하여 IDEA 의 B 부에 의거한 문제를 수반하는 불일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적정 절차 불평안의 제소**의 기재사항에 따라 적정 절차 공청회를 요청하기 위해 귀하나 LEA 가 적정 절차 불평안을 제소한 여부를 떠나 중재안은 IDEA 의 B 부에 의거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B. 절차상의 요구조건**

**절차상에 있어 중재 과정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띠도록 한다:**

1. 귀하와 LEA 측에 있어 자발적이다 ;
2. 적정 절차 공청회에 대한 귀하의 권한을 부정하거나 연기, 혹은 IDEA 의 B 부에 의거하여 귀하의 기타 다른 권한을 부정하는데 이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3. 효율적인 중재기술로 수련된 자격증 소지의 공평한 중재인에 의하여 시행된다.
4. SEA 는 자격증 소지의 중재자와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조항에 관련한 법 및 규제사항의 지식을 보유한 이들에 대한 목록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SEA 는 임의적, 순회적, 기타 공평한 선택선정의 방법으로 중재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주는 회의 비용을 비롯해 중재 과정의 비용에 책임을 진다.
6. 중재 과정의 각기 단계는 적시에 일정을 이루며 귀하와 LEA 에 가까운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 **귀하와 LEA 가 중재과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양 당사자는 결의안 내용을 기술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a. 중재과정 중에 거론은 기밀로서 유지되며 후속적 형태의 적정 절차 공청회 혹은 민사소송의 증거물로서 이용되지 않는다. ; **그리고**
  - b. 귀하와 LEA 의 구속력에 대한 권한을 지니는 LEA 의 대표인에 의하여 서명된다.
8. 서면으로서의, 서명된 형태의 중재 동의서는 적임의 사법권한을 보유하는 주법정(주법에 의하여 이러한 사례유형을 경청할 권한을 지니는 법정) 어디에서나 혹은 미국 지역 법정에서의 실행이 가능하다.
9. 중재과정 중에 거론은 기밀로서 유지되어야 한다. 후속적 형태의 적정 절차 공청회 혹은 IDEA 의 B 항에 의거해 지원을 부여받는 연방법정 혹은 주법정의 민사소송의 증거물로서 이용되지 않는다.

**C. 중재자의 공평성**

중재자는:

1. 귀하의 자녀에 대한 교육 혹은 관리에 관여되는 SEA 혹은 LEA 의 종업원이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2. 중재자의 객관성과 상충되는 개인적 혹은 전문적 관심사를 보유하여서는 안된다.
- 중재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이는 기관으로부터 중재자로서 지불되어지는 것만으로서 LEA 혹은 SEA 의 종업원이 아닌 것이다.

**VII. 아동의 배치 미결정 중재와 적정 절차 (34 CFR §300.518)**

---

**A. 일반**

**아동의 배치 미결정 중재와 적정 절차 (34 CFR §300.518)**

아래의 **장애아동의 훈련에 대한 절차** 사항을 제외하고, 해결안 과정 기간 동안, 중재기간 동안 적정 절차 불평안이 당사자에게 보내지면 그리고 공평한 적정 절차 공청회 혹은 법정 소송의 결정안을 기다리는 동안, 귀하와 주 혹은 LEA 가 다른 형태로서 동의하지 않는한 귀하의 자녀는 자신의 현재 교육 배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적정 절차 불평안이 최초의 공립학교에 대한 승인에 대한 신청서를 수반하는 경우 전체 절차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귀하의 자녀는 귀하의 동의서와 함께 일반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한다.

적정 절차 과정이 IDEA 의 B 부에 의거해 IDEA 의 C 부에서 IDEA 의 B 부로 변경하며 아동이 3 세에 도달하여 C 부의 서비스에 자격인이 더 이상 아닌 경우의 아동을 위한 최초의 서비스에 대한 신청서를 수반하는 경우 LEA 는 아동이 습득해온 C 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된다. 3 세에 학교 이전 초기 중재 프로그램으로 이동될 때 분쟁이 발할 때 그리고 가족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를 요청할 때 아동은 소송 계속의 권한을 지닌다 - 다시 말해 이들의 IFSP 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을 뜻한다. 아동이 IDEA 의 B 부에 의거해 자격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그리고 귀하가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최초로 아동에게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이들 절차의 결과가 미결정상태인 경우 LEA 는 이들 분쟁 중이지 않은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귀하와 LEA 가 모두 동의한) 제공하여야 한다.

부록 A

자료

**RESOURCES**

**CONNECT (초기 개입을 위한 정보 서비스)**  
Center for Schools and Communities  
275 Grandview Avenue, Suite 200  
Camp Hill, PA 17011  
800-692-7288

(for TTY, dial 711 for Relay Service)  
출생서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주, 지역, 국가  
기관 및 이에 관한 안내정보. 초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소개 주선.

**THE ARC OF PENNSYLVANIA**

101 South Second Street  
Suite 8  
Harrisburg, PA 17101  
800-692-7258

[www.thearcpa.org](http://www.thearcpa.org)

**PARENT EDUCATION NETWORK (PEN)**

2107 Industrial Highway  
York, PA 17402-2223

717-600-0100 (음성/TTY)

800-522-5827 (음성/TTY)

800-441-5028 (PA 내 스페인어)

717-600-8101 (Fax)

[www.parentednet.org](http://www.parentednet.org)

**PARENT EDUCATION AND ADVOCACY LEADERSHIP  
CENTER (PEAL)**

1119 Penn Avenue  
Suite 400  
Pittsburgh, PA 15222

412-281-4404 (음성)

866-950-1040 (음성)

412-281-4409 (TTY)

412-281-4408 (Fax)

[www.pealcenter.org](http://www.pealcenter.org)

**HISPANICS UNITED FOR EXCEPTIONAL CHILDREN  
(HUNE, INC.)**

202 West Cecil B. Moore Avenue  
Philadelphia, PA 19122

215-425-6203 (음성)

215-425-6204 (Fax)

[www.huneinc.org](http://www.huneinc.org)

**THE MENTOR PARENT PROGRAM, INC.**

P. O. Box 47  
Pittsfield, PA 16340

814-563-3470 (음성)

888-447-1431 (PA 내 음성)

800-855-1155 (TTY)

814-563-3445 (Fax)

[www.mentorparent.org](http://www.mentorparent.org)

**DISABILITIES RIGHTS NETWORK**

1414 North Cameron Street  
Suite C

Harrisburg, PA 17103

800-692-7443 (무료 음성)

877-375-7139 (TDD)

717-236-8110 (음성)

717-346-0293 (TDD)

717-236-0192

[www.drnpa.org](http://www.drnpa.org)

**PENNSYLVANIA BAR ASSOCIATION**

100 South Street

Harrisburg, PA 17101

800-932-0311 (전화)

[www.pabar.org](http://www.pabar.org)

**OFFICE FOR DISPUTE RESOLUTION**

6340 Flank Drive

Harrisburg, PA 17112-2764

717-541-4960 (전화)

800-222-3353 (PA 에서만 무료)

800-654-4984 (TTY)

717-657-5983 (Fax)

<http://ODR.pattan.net>

주내 중재 및 적정 절차 시스템을 관리하며 대체 분쟁  
해결방법에 관련한 연수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EARLY INTERVENTION TECHNICAL ASSISTANCE  
THE PENNSYLVANIA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NETWORK (PaTTAN)**

Harrisburg 800-360-7282

King of Prussia 800-441-3215

Pittsburgh 800-446-5607

[www.pattan.net](http://www.pattan.net)



EI 정당한 법의 절차 불평 통지서

B 부

정당한 법의 절차 불평 통지서

오늘 일자: \_\_\_\_\_ 요청인:  부모  LEA  
본 통지서의 작성인: \_\_\_\_\_ 아동과의 관계: \_\_\_\_\_ 전화: \_\_\_\_\_

분쟁 해결 사무소에 본 정당한 법의 절차 불평 통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 정당한 법의 절차의 복사본을 전달하여 정당한 법의 절차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합니다.

상대가 본 요청서의 복사본을 수령하였습니까?  네  아니요

정당한 법의 절차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요청되는 경우 LEA 에 이와 관련하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정보

성: \_\_\_\_\_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성:  남  여

예외: \_\_\_\_\_

LEA (지역 교육 기관): \_\_\_\_\_ 자녀가 참석하는 프로그램: \_\_\_\_\_

아동과 거주하는 부모

성: \_\_\_\_\_ 이름: \_\_\_\_\_ 관계:  엄마  아빠  보호자

자택전화: \_\_\_\_\_ 휴대폰: \_\_\_\_\_ 직장전화: \_\_\_\_\_ Fax: \_\_\_\_\_ Email: \_\_\_\_\_

성: \_\_\_\_\_ 이름: \_\_\_\_\_ 관계:  엄마  아빠  보호자

자택전화: \_\_\_\_\_ 휴대폰: \_\_\_\_\_ 직장전화: \_\_\_\_\_ Fax: \_\_\_\_\_ Email: \_\_\_\_\_

부모/아동 주소: \_\_\_\_\_

부모 변호사: \_\_\_\_\_ 변호사 전화: \_\_\_\_\_  
변호사 Email: \_\_\_\_\_

주소: \_\_\_\_\_ 변호사 Fax: \_\_\_\_\_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

성: \_\_\_\_\_ 이름: \_\_\_\_\_ 관계:  엄마  아빠  보호자

자택전화: \_\_\_\_\_ 휴대폰: \_\_\_\_\_ 직장전화: \_\_\_\_\_ Fax: \_\_\_\_\_ Email: \_\_\_\_\_

성: \_\_\_\_\_ 이름: \_\_\_\_\_ 관계:  엄마  아빠  보호자

자택전화: \_\_\_\_\_ 휴대폰: \_\_\_\_\_ 직장전화: \_\_\_\_\_ Fax: \_\_\_\_\_ Email: \_\_\_\_\_

## EI 정당한 법의 절차 불평 통지서

부모 주소: \_\_\_\_\_  
부모 변호사: \_\_\_\_\_ 변호사 전화: \_\_\_\_\_  
\_\_\_\_\_ 변호사 Email: \_\_\_\_\_  
주소: \_\_\_\_\_ 변호사 Fax: \_\_\_\_\_  
\_\_\_\_\_  
\_\_\_\_\_

### 지역 교육 당국 (LEA) 정보

#### I. LEA 연락처

성: \_\_\_\_\_ 이름: \_\_\_\_\_ 직함: \_\_\_\_\_  
\_\_\_\_\_ \_\_\_\_\_ \_\_\_\_\_  
휴대폰: \_\_\_\_\_ 직장전화: \_\_\_\_\_ Fax: \_\_\_\_\_ Email: \_\_\_\_\_  
\_\_\_\_\_ \_\_\_\_\_ \_\_\_\_\_  
주소: \_\_\_\_\_  
\_\_\_\_\_

#### II. 관리자/CEO

성: \_\_\_\_\_ 이름: \_\_\_\_\_ 직함: \_\_\_\_\_  
\_\_\_\_\_ \_\_\_\_\_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_\_\_\_\_

#### III. LEA 변호사

성: \_\_\_\_\_ 이름: \_\_\_\_\_ 변호사 전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변호사 Email: \_\_\_\_\_  
주소: \_\_\_\_\_ 변호사 Fax: \_\_\_\_\_  
\_\_\_\_\_

#### IV. 정당한 법의 절차 공청회는 다음에서 시행됩니다:

(빌딩명, 주소, 호실/사무실 이름 - LEA 작성용)

\_\_\_\_\_  
\_\_\_\_\_

### 정당한 법의 절차에 대한 불평 통지서 안내

A. 귀하의 안전이 시행되지 않은 공청회 사무관의 결정안과 관련있습니까?

네  아니요

(네인 경우 초기 개입 서비스 사무곡에게 통보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당한 법의 절차는 안전이 공청회 사무관의 비실행과 관련된 경우 시행되지 않습니다.)

B.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조건에 맞는 정당한 법의 절차에 대한 불평 통지서가 제출될 때까지 당사자는 정당한 절차에 관한 공청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 당사자가 정당한 법의 절차에 대한 불평 통지서에 있어 불충분한 사유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의 요청에 이르는 안전을 충분한 해당사항의 설명과 함께 제시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고 시행이 가능한 이의 해결 제시안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여백지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EI 정당한 법의 절차 불평 통지서

안건의 성격:

해결제시안:

상대 당사자의 이에 대한 견해를 이곳에 기재하시요. (법률에 의거하여 반드시 요청되는 사항은 아님):

**C. 당한 법의 절차에 대한 공청회의 이전에 양 당사자들은 법률에 의거하여 해결안의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서면상으로서 이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는 제외되게 됩니다 :**

1. 당 안건에 관한 해결안의 모임의 일정: \_\_\_\_\_ (일자)
2. 해결안의 모임이 열린 때: \_\_\_\_\_ (일자)
3. 양 당사자, LEA 가 해결안의 모임에 참석에 대한 포기를 서면상으로 이룬 때:  
\_\_\_\_\_ (Date)
4. 해결안의 모임의 대신하는 것으로서 저는 중재를 요청합니다\*:

\* 4 번이 체크된 경우 ODR 중재 사례 관리자가 양 당사자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 EI 정당한 법의 절차 불평 통지서

본 양식서의 복사본을 상대 당사자 및 분쟁 해결 사무소로 혹은 팩스 하세요.

**Office for Dispute Resolution**  
**6340 Flank Drive**  
**Harrisburg, PA 17112-2764**  
전화:  
717-541-4960  
800-222-3353  
(펜실베이니아내)  
800-654-5984 (TTY)  
717-657-5983 (Fax)

본 정당한 법에 관한 불평 통지서를 받은 후 ODR의 사례 관리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법의 절차에 관한 기타 정보는 [odr.pattan.net](http://odr.pattan.net) 를 방문하시거나 **특별 교육 분쟁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께서서는 또한 **Connect** (초기 개입을 위한 정보 서비스)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800-692-7288 (TTY - 711) 를 돌려 중계 서비스를 받습니다).